

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 
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안 광석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재 서울시는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, 적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원가분석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해 「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- 한편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제2항이 2016. 9.13. 개정되어 상한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.
- 하지만, 현행 서울시 조례에는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.
- 이에, 본 의원은 조례 제명 변경과 더불어 제12조를 삭제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0조제2항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써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